

1. 서언

이 글은 한국 고유한자 판단의 오류 사례를 논의하고 한국 고유한자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중국의 자서나 운서의 수록 여부를 한국 고유한자의 고유성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물론 鮎貝房之進(1931)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한국 고유한자의 고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논의하기는 하였다. 한국 고유한자가 가지는 고유성을 말해 주는 증거에 대한 탐구는 이견식(2019ㄱ)에서 이루어져 일부의 한국 고유한자가 한자로 밝혀졌으며 일부의 한국 고유한자의 경우에는 고유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 자료가 제시되었다.

이 글은 이견식(2019ㄱ)의 논의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 고유한자 판단의 오류 사례와 한국 고유한자의 고유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고유한자 판단의 오류 사례

1) 謎

『한국한자어사전』에서 『훈몽자회』에 출현한 謎를 國字로 규정하여 한국 고유한자로 다루고 있다.

(1) 謎 므즈밋 미 俗呼謎水 <훈몽자회 중:1b>

『한국한자어사전』에서 謎를 국자로 판단한 것은 중국의 역대 각종 자서나 운서에 謎가 출현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현대에 간행된 『異體字字典』, 『漢語大詞典』, 『中華字海』, 『漢語大字典』 등에서도 謎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元나라 劉瑾이 편찬한 『詩傳通釋』에는 다음과 같이 謎가 출현한다.

(2) 물 속에서 가는 것을 泳이라 하고 물에 떠서 (가는 것을) 游라 한다. 삼가 살펴 보건대 泳과 游는 오늘날의 시속에서는 謎와 洄라 한다.¹⁾ <詩傳通釋 권2>

(2)는 泳과 游가 謎와 洄로 교체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중국 원나라 시기에는 泳과 游 대신에 謎와 洄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에서 謎의 훈으로 제시한 ‘므즈밋’은 ‘물(<물)+좁-(동사어간)+-이(명사 파생접미사)+-ㅅ(속격조사)’ 정도의 구성에서 온 것으로 ‘므즈미’는 ‘물자맥질’ 정도의 의미이다. 따라서 (1)과 (2)의 謎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훈몽자회』에 출현한 謎는 한국 고유한자가 아니라 한자이다.

1) 『詩傳通釋』, 권2, “泳與游 潛行曰泳 浮水曰游 愚按泳與游 今俗所謂謎與洄也”

2) 碇

碇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 나온다

- (3) 가. 舵工 二十五 繚手 八 碇手 八 <萬機要覽 軍政篇 4 舟師 慶尙左水營>
나. 舵工 二十五 繚手 八 碇手 八 <萬機要覽 軍政篇 4 舟師 全羅左水營>

최동언(2001: 57)은 (3)에 나오는 碇手를 ‘닻을 오리고 내리는 일을 맡은 사람’의 의미인 碇手로 파악하여, 碇이 ‘닻’의 의미이며 ‘새로 만든 글자’로 판단하였다. 최동언(2001: 57)이 碇을 ‘새로 만든 글자’로 판단한 것은 碇을 고유한자로 규정한 것인데, 고유한자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碇은 漢字이다. 이러한 사실은 『漢語大詞典』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 (3) 碇 1.木塾.《莊子·馬蹄》“編之以阜棧”唐成玄英疏:“棧,編木爲碇,安馬脚下,以去其濕,所謂馬牀也.” 2.同“碇”.系船的石礮或鐵錨.清魏源《道光洋艘征撫記》上:“其國貨船,先後起碇揚帆,駛出老萬山者十餘艘.”姚錫光《東方兵事紀略·山東篇》:“倭船二十餘艘來威海……將夕,俱駛至北山嘴西北山後下碇.” 3.引申爲下碇,停泊.清林則徐《批瓊州鎮該轄洋面近時始有外船稟》:“即來該處,而私貨不售,水米不繼,該夷船又安能久碇?” 4.見“碇花”.<漢語大詞典>

(3)에 제시한 碇의 두번 째 뜻풀이 ‘同碇’에서 碇이 ‘닻’을 뜻하는 碇과 같은 의미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餽

餽에 대해서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에서는 ‘東國土俗字’, 『新字典』에서는 ‘朝鮮俗字’라 하여 한국 고유한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新字典』에서 餽를 ‘조선속자’로 판단한 것에 따라 『한국한자어사전』에서도 餽를 ‘국자’로 판단하였다.

- (4) 가. 餽【音遼.俗訓飢乏小食曰餽飢.】<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
나. 餽, 飢 飢乏不食, 飢飢할 飢. 見俗書.<新字典 朝鮮俗字部>

‘東國土俗字辨證說’, 『新字典』, 『한국한자어사전』 등에서 餽를 한국 고유한자로 판단한 것은 餽가 중국의 역대 자서나 운서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에 간행된 『異體字字典』, 『漢語大詞典』, 『中華字海』, 『漢語大字典』 등에서도 餽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중국 자료에서는 餽가 사용되고 있다.

- (5) 가. 단단함은 오곡이 굶주림[飢]을 달래는[餽] 것과 같고 藥石이 병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²⁾ <鴻慶居士集 권31 谷盈通說序 17>

나. 先生의 詩文은 모두 까닭이 있어 지은 것이므로 精悍하고 확고하다. 말은 반드시 당시의 잘못에 적중하여 엄밀함은 五穀이 반드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같고, 단호함은 藥石이 반드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과 같다.³⁾ <宋大家蘇文忠公文抄 卷23 序 傳, 晁繹先生集序>

다. 饒[一曰饒]饒腴饒飢也 <酉陽雜俎 권7, 酒食 >

(5가)에 제시한 饒는 ‘허기[飢]를 달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5나)에서는 (5가)와 유사한 내용에서 饒飢가 아니라 療饑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療饑에 기대어 饒飢가 파생되었을 것이고 鴻慶居士는 孫覲(1081 - 1169)을 말하므로 蘇文忠은 송나라 소식을 말하므로 饒는 한자로 파악된다.

(5다)에서 餌는 ‘먹이’의 뜻이다. 따라서 (5다) 饒의 의미를 ‘허기를 달래다’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酉陽雜俎의 저자인 段成式(803-863)은 당나라 사람이므로 饒는 한국 고유한자가 아니라 한자이다.

4) 硤

鮎貝房之進(1931 :205)은 硤의 의미를 ‘암석을 뚫어 만든 물 길’로 파악하고 硤을 ‘속자’라 하여 한국 고유한자로 파악하고 있다. 김종훈(1983)도 이 견해를 받아 들여 硤을 ‘국자’라 규정하였다. 硤은 다음과 같은 한국 자료에 나온다.

(6) 가. 강도에 大清浦, 昇天浦, 鎮江浦 등 3개의 큰 浦가 있어 제방을 쌓을 수는 있었으나 예로부터 쌓기 어렵다고 말하여 왔다. 甲辰[顯宗五年]에 趙復陽이 유수가 되어 긴 제방을 다 쌓고, 돌을 뚫어 硤을 만들었다. 당시에 물을 가두거나 물을 뺄 수 있도록 한 것이 모두 20여 리였고, 논밭 수천 頃을 얻었다.⁴⁾ <文獻備考 田賦 堤堰>

나. 鄞縣 사람들이 돌을 여러 겹으로 쌓아서 물을 막고 그 사이를 터서 나무로 빗장을 만들었다가 물의 많고 적음을 살펴서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였으니 이를 硤이라 하였다.⁵⁾ <牧民心書 卷十一 工典六條 川澤>

『한국한자어사전』에서 硤을 고유한자인 국자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硤이 중국의 역대 자서나 운서에 출현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硤은 『漢語大詞典』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7) 硤 水閘. 宋曾鞏《廣德湖記》：“鄞人累石陞水，闕其間而扃以木，視水之小大而閉縱之，謂之硤” <漢語大詞典>

2) 『鴻慶居士集』, 권31, 穀盈通說序, “官府居鄉黨正閭門交朋友 奉祭祀遺子孫御僕妾一皆出于帝道 坦然明白 易知易行 無甚高難行之論 無迂闊難信之語 斷斷然如五穀可以療飢 藥石可以伐病”

3) 『宋大家蘇文忠公文抄』, 卷23, 序, 傳, 晁繹先生集序, “先生之詩文 皆有爲而作 精悍確苦 言必中當世之過 鑿鑿乎如五穀必可以療饑 斷斷乎如藥石必可以伐病 其游談以爲高 枝詞以爲觀美者 先生無一言焉”

4) 『文獻備考』, 田賦, 堤堰, “江都有大青昇天鎮江三大浦 可作陂堤 而自古稱難築 甲辰[顯宗五年] 趙復陽爲留守 皆築爲長堤 鑿石爲硤 時其蓄洩 合二十餘里 得水陸田數千頃。

5) 『牧民心書』, 卷十一, 工典六條, 川澤, “鄞人累石陞水 闕其間而扃以木 視水之小大 而閉縱之 謂之硤”

(7)에서 硯의 의미를 水關[물문]으로 풀이하고 있고 (6나)의 내용은 (7)에서 예문으로 제시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6)의 硯보다는 (7)의 硯이 시대가 앞선 것이므로 硯은 한국 고유한자가 아니라 한자이다.

5) 榼

榼에 대하여 鮎貝房之進(1931 :193)은 ‘속자’, 김종훈(1983)은 ‘國音字’, 『한국한자어사전』은 ‘국의자’라 하였다. 鮎貝房之進(1931 :193)은 『說文解字』의 榼에 대한 풀이 ‘榼 履法也’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사용된 榼의 의미가 중국에서 사용된 의미와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종훈(1983)이 ‘국음자’, 『한국한자어사전』이 ‘國義字’라 한 것도 한국과 중국의 榼을 다른 의미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한국 자료에 사용된 榼의 의미를 『한국한자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8) 榼 문설주 선 신골 흰 國義 榼 문설주. 문틀에서, 양쪽에 세로 세운 나무. 《華城城役儀軌 6, 財用 下, 城神祠》 榼單八箇, 壁榼六箇. 《昌慶宮營建都監儀軌, 實入, 通明殿》 假退榼端十箇, 壁榼八箇. <한국한자어사전>

(9) 가. 【土壁榼 토벽선】 榼一 榼기둥 옆에 흙벽을 칠 때, 흙이 직접 기둥에 닿지 않게 기둥면에 세워 대는 벽선. “榼”은 “榼”로도 쓴다. 榼二 榼흙벽 중간에 세운 벽선. 인방(引枋)이 휘어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흙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세운다. “榼”은 “榼”로도 쓴다. 《昌慶宮營建都監儀軌, 實入, 通明殿二十八間》 壁榼四十四箇, 土壁榼五十二箇. <한국한자어사전>

나. 【壁榼 벽선】 榼一 榼기둥과 벽 사이에 세우는 네모진 굵은 나무. 榼二 “壁心”과 같다. 榼三 榼문설주. 壁榼. 《華城城役儀軌 5, 財用 上, 長安門》 壁榼四箇(裁折木一箇). 《昌慶宮營建都監儀軌, 實入, 通明殿二十八間》 壁榼七十六箇, 雙窓壁榼八箇. <한국한자어사전>

(8)과 (9)의 여러 의미 풀이에서 (9가)의 ‘흙벽 중간에 세운 벽선. 인방이 휘어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흙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세운다’가 주목된다. 이 풀이가 榼의 본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형체를 유지한다’는 것이 榼의 중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榼의 이러한 중심적인 의미는 한자 榼에서도 찾을 수 있다.

(10) 榼 △흰 (중략) 《說文, 木部》 榼, 履法也. (중략) 榼一 나무로 만든 신골. (중략) 榼二 물체의 빈 속을 채워 만든 골. 골은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을 잡거나 만든 물건의 모양을 바로잡는 틀이다. (중략) 榼三 물체의 빈 속을 물건으로 채우다. (중략) 榼四 신에 신골이나 발을 넣어 크게 하다. (중략) <漢韓大辭典>

(10)은 한자 榼에 대한 네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네 가지 의미 풀이에서 한자 榼의 중심적인 의미는 ‘형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곧 (10)에서 이러한 중심적인 의미를 ‘골은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을 바로 잡거나 만든 물건의 모양을 바로 잡는 틀’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 고유한자로 논의되어 왔던 榼은 漢字로 추정된다.

3. 고유한자 증거의 탐구

3.1. 고유어와 음차 표기자의 형성 고유한자

1) 泔

泔에 대하여 鮎貝房之進(1931: 117)는 ‘속자’, 『한국한자어사전』에서는 ‘국자’라 하여 泔을 한국의 고유한자로 다루고 있다. 다음과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鮎貝房之進(1931: 117)은 泔을 해성 조자로 설명하고 있다.

(11) 가. 南海의 牙山 이상 및 西海의 箕島 이상의 海泔嶼草漁場 江都에 全屬하여 세를 징수하며, 사옹원 및 여러 궁가에 등록된 배는 세를 절반만 징수한다.⁶⁾ <大典通編 戶典 魚鹽 江華魚箭·船隻·鹽盆 >

나. 瀉鹵 석로 鹹土可煮鹽 起耕曰垆 俗傳泔 <名物紀略>

(11나)의 자료를 근거로 鮎貝房之進(1931 : 117)은 ‘泔’과 한자 垆를 연관 시키고 있으나 ‘개간한 땅’을 의미하는 한자 垆⁷⁾과 한국 고유어 ‘泔’은 관련이 없다.

鮎貝房之進(1931 : 117)이 (11가)의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泔이 ‘해성 조자’임을 밝힌 것은 근거 자료의 제시가 불충분하다. 泔은 (11)에 제시된 海泔 이외에 ‘泥泔, 浦泔’ 등으로 사용된다.

(12) 가. 富平石串浦 潮退之後 及弦水時 泥泔成坪 決非賊船駐泊之地 <승정원일기 1711년(숙종 37) 3월 14일>

나. 浦泔處 給價二百兩 買得於南陽尹哥 <승정원일기 1785년(정조 9) 8월 20일>

‘海泔, 泥泔, 浦泔’ 등의 泔은 ‘펼⁸⁾’의 의미를 표기한 것이다. 泔에서 伐이 ‘펼’을 음차 표기하고 ‘펼’이 단순한 별판이 아니라 ‘물기가 있는 별판’의 의미를 표시하기 위하여 彳 편방을 첨가하여 泔을 구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伐은 ‘벌’ 정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伐이 ‘펼’을 표기할 수 있는 사실은 ‘펼지기’를 뜻하는 말이 泔直⁹⁾으로도 표기되지만 伐直¹⁰⁾으로도 표기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결국 泔은 한국 고유어 ‘펼’을 伐로 음차 표기하고 彳 편방을 첨가하여 泔의 자형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 泔은 형성의 한국 고유한자라 할 수 있다.

6) 『大典通編』, 戶典, 魚鹽, 江華魚箭·船隻·鹽盆, “南海之牙山以上·西海之箕島以上 海泔嶼草漁場 專屬江都收稅 而司饗院·諸宮家案付船 收半稅”

7) 『漢語大詞典』에서 垆의 의미를 ‘耕地翻土’로 풀이하고 있으며 唐 韓愈의 「送文暢師北遊」라는 詩에 사용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8)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펼’의 의미를 “1. 밑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 펼 갯벌, 혼성 갯벌, 모래 갯벌 따위가 있으며 생물상이 다양하게 분포한다.=갯벌. 2. 갯가의 개흙. 3. ‘벌’의 거센말.”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9) 『續大典』, 2, 戶典, 徭賦, “凡給復 非關由本曹 宣惠廳則勿施(軍器寺柴場募民 鴨島泔直 內需司山直 甲士倉募民……三聖祠直給復)”

10) 『受教輯錄』, 2, 戶典, 徭賦, “鴨島伐直 甲士倉募民 私賤御營軍 御乘牽馬夫……捉虎人等給復”

3.2. 차용어 음차 표기자의 형성 고유한자

1) 褌

褌에 대하여 鮎貝房之進(1931 :214)만 ‘속자’라 하여 한국의 고유한자로 다루었다. 그러나 ‘東國土俗字辨證說’, 『新字典』, 김종훈(1983), 『한국한자어사전』 등에서는 한국의 고유한자로 파악하지 않았다. ‘東國土俗字辨證說’, 『新字典』, 김종훈(1983), 『한국한자어사전』 등에서 褌를 한국 고유한자로 다루지 않은 까닭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褌에 대하여 鮎貝房之進(1931 :214)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3) 가. 褌商

나. 褌負商

褌商과 褌負商이 나오는 문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가. 錦山에서 褌商輩들이 匪賊을 때려죽였다¹¹⁾ <고종실록 1894년(고종 31) 4월 4일>

나. 褌商所任을 없애며 거두어들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¹²⁾ <고종실록 1895년(고종 32) 2월 19일>

(15) 가. 그런데 끝내 우둔한 저 褌負商들이 제 마음대로 난동을 부려 民會를 몰아서 쫓아내고는 충의를 위하여 일어나는 분개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핑계를 대었는데 결국 백성들을 선동해서 난을 일으키게 된 것은 사실 그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¹³⁾ <승정원일기 1898년(고종 35) 10월 11일>

나. 第二十九條, 褌負商의 奪婦와 掘塚하는 諸般弊習을 一切嚴禁할 事 <고종실록 1895년(고종 32) 3월 10일>

(14)의 褌商은 ‘보짐 장수’를 말하고 (15)의 褌負商은 ‘보짐 장수’와 ‘등짐 장수’를 아울러 말한 것이다. ‘보짐 장수’의 ‘보’는 ‘보자’ 또는 ‘보자기’를 말하는 것이다. 한자 褌는 ‘포대기¹⁴⁾’를 의미하고 한국 고유한자 褌는 ‘보자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鮎貝房之進(1931 :214)은 褌를 한국 고유의 ‘諧聲造字’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자기’를 뜻하는 ‘보’를 保로 음차 표기하고 衣 偏旁을 첨가하여 한국 고유한자 褌의 자형을 구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 고유한자 褌는 형성의 고유한자이다.

‘보자기’를 뜻하는 한국어 ‘보’는 한어 褌를 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16) 가. 褌, 《字彙》房六切] 1.包頭巾. 參見“褌子”. 2.包裹、遮蓋衣物用的布單. 宋陳鵠《耆舊續聞》卷六:“僧又恐其疑己, 謂曰:‘我即坐此, 汝自往吾臥內, 取一箱褌來.’” <漢語

11) 『고종실록』, 1894년(고종 31) 4월 4일, “錦山褌商輩之擊殺匪類”

12) <고종실록 1895년(고종 32) 2월 19일> 革罷負褌商所任, 無得收斂事也

13) 『승정원일기』, 1898년(고종 35) 10월 11일, “末乃愚彼褌負商 擅自激鬧 驅逐民會 藉曰忠忿攸在 而終致亂民之煽動 實職此由也”

14) 『漢語大詞典』, 褌, “《廣韻》博抱切, 上皓, 幫. 裹覆嬰兒的小被. 漢劉向《新序·節士》: 而二人謀取他嬰兒, 負以文褌, 匿山中.”

大詞典>

나. 包袱 보 <역어유해 하 15a>, 袍袱 보 <蒙語類解 상:45a>

다. 我的衣裳、被兒、包袱也都咬了/ 내 衣裳과 니블 뿐 보흘 다 터시니 <朴通事諺解 중:56b>

(16가)에서 袱의 의미를 ‘包頭巾(머리를 감싸는 수건), 包裹(싸는 거)’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袱의 이같은 의미는 한국어 ‘보자기’의 의미와 일치한다. 또한 ‘보자기’의 ‘보’가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불’의 어형인 점에서도 ‘보자기’의 ‘보’는 한자 袱을 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訓蒙字會』上:11b에는 한자 褥의 훈과 음이 ‘요’ 속’으로 나타나는데, 褥의 훈 ‘요’는 15세기에는 ‘솔’의 형태였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후기 중세국어의 ‘솔’은 한자 褥을 차용한 것이라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15세기에 ‘불’은 한자 袱을 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2) 樑

樑에 대하여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은 東國土俗字, 『新字典』은 朝鮮俗字, 鮎貝房之進(1931: 196)은 俗字, 김종훈(1983)은 國音字, 『한국한자어사전』은 國字라 하였다.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 『新字典』, 鮎貝房之進(1931: 196), 『한국한자어사전』 등은 樑를 한국 고유한자로 파악했으나 『康熙字典』에 실린 樑 항목의 뜻풀이 鐘樑를 고려하여 김종훈(1983)은 樑를 국음자로 처리하였다.

鮎貝房之進(1931: 196)은 樑에 대한 관련 용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樑의 관련 용례와 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가. 從樑小不等二条 各長正入十尺 圓經一尺二寸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造成所, 5月初10日>

나. 棟木二條 從樑木三條 <仁祖大王山陵儀軌 自都監斫伐或給價買用秩>

다. 則柱木四箇 從樑一箇 中方中衿杢木 幾盡腐破 <승정원일기 1697년(숙종 23) 4월 12일>

(18) 가. 樑【音保. 梁也. 見《戶曹定例》. 卽杢字之譌. 黃公紹《韻會》. 杢. 音伏. 梁杢也. 張自烈《正字通》. 以小木附大木上爲杢. 《舊唐書·裴延齡傳》. 德宗謂延齡曰. 浴堂院殿一杢. 似有損蠹. 是也. 我東以廳事大梁爲輔木. 蓋杢也. 實從華語. 而今示人杢字. 爲正而無人知之. 誰能強辨.】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

나. 樑, 보, 樑也, 들보. 見戶曹定例.

한국한자어사전에서 (17가) 從樑의 의미를 ‘대들보 위의 동자기둥에 얹히는 보’로 풀이하고 있다. 한자 樑는 ‘보’의 의미이고¹⁵⁾, 『訓蒙字會』中:6b에서 樑의 훈과 음을 ‘보 량’이라 하였으므로 (17나)의 從樑은 從樑과 같은 의미이다. 또 (18가)와 (18나)에서 樑의 의미를 梁 또는 樑이라 하였으므로 (17다)의 從樑 역시 從樑과 같은 의미이다.

(18가)의 ‘我東以廳事大梁爲輔木. 蓋杢也. 實從華語’라는 설명은 우리말 ‘보’가 한자 樑에서 온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현대어 ‘대들보’의 ‘보’가 15세기에는 ‘불’ 형태를 가지는 것도 15세기 ‘불’가 한자 樑에서 차용된 것임을 말해 준다 결국 樑는 차용어 ‘보’를 음차 표기 글자

15) 『漢語大詞典』, 杢, “房梁”

保에 木 편방을 추가한 형성의 고유한자가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들보’의 ‘보’를 保로 음차 표기하고 있다.

(19) 可合保 道里者三株 削仕三十日 <義禁府謄錄, 正祖己亥3月15日>

3) 淥

淥는 한자에서 涎의 속자¹⁶⁾이다. 그리고 한자 涎은 대표적으로 ‘침’ 정도¹⁷⁾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 고유한자 淥는 ‘강물을 가로막는 독’을 뜻하는 ‘보’를 의미한다.

(20) 가. 九曲水 一曰池塘溪 二曰元定保 三曰石橋灘 四曰銀鶴淥 五曰銀魚灘 六曰龍潭 七曰魚梁 八曰關東淥 九曰蛤灘. <善養亭文集年譜 善養亭年譜 十七年己丑>

나. 京居全道誠 以一洞赴役於築淥事 <荷齋日記 九 乙巳年(1905) 六月>

(20가)의 銀鶴淥, (20나)의 築淥 등에서 淥는 ‘강물을 가로막는 독’을 의미한다. 유희 『물보』 五:水에는 ‘방축’을 뜻하는 ‘보’가 실려 있다. (20)의 淥는 ‘보’를 保로 음차 표기하고 彳 편을 추가하여 만든 형성의 고유한자가 된다.

‘강물을 가로막는 독’을 의미하는 ‘보’는 흔히 고유한자 湫로 표시된다. 고유한자 湫의 자형 구성법에 대해서는 편방을 교체한 고유한자에 대한 설명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2. 한자의 형성 고유한자

1) 櫛

櫛에 대하여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에서는 東國土俗字, 鮎貝房之進(1931:267-268)에서는 俗字, 김종훈(1983)에서는 國字, 최동언(2001)에서는 ‘새로 만들 글자’, 『한국한자어사전』에서는 國字라 하여 한국 고유한자로 다루었다. 중국의 역대 각종 자서나 운서에 櫛이 출현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현대에 간행된 『異體字字典』, 『漢語大詞典』, 『中華字海』, 『漢語大字典』 등에서도 櫛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新增類合』 28a의 ‘櫛 장 장’에서 보는 것처럼 櫛의 음과 훈이 동일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鮎貝房之進(1931:268)은 櫛을 ‘회의해성’으로 파악하였다.

櫛은 가구의 일종인 ‘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櫛이 한자 藏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열어 주고 있다.

(21) 가. 傳教之時, 在乎冊藏上, 故如是啓達也. <중종실록 1528년(중종 23) 8월 17일>

나. 第十一室冊藏下地衣,皆有咬嚙之處 <영조실록 1748년 3월 7일>

16) 『한한대사전』, 淥, “연 涎의 속자. 《龍龕手鑑, 水部》 涎, 俗作淥.”

17) 『한한대사전』, 涎, “一一[침]. 타액(唾液). [●]二[침]을 흘리다. 《紅樓夢, 95回》 賈母·王夫人遵旨進宮, 見元妃痰塞口涎, 不能言語. [●]三[점액(粘液)]. 즈(汁). [●]四[담내다. 군침을 흘리다. [●]五[눈이] 풀리다. 게슴츠레하다. [●]六[히히거리며] 웃다. 뻔뻔스럽다. [●]七[토하다. 뱉다. ⇨ 涎縷·涎玉沫珠. [●]八[탐욕스럽게] 노려보다. [●]九[끝없이] 넓은 모양. 冊二[물이] 흐르는 모양. 冊三[반질거리는] 모양.”

(22) 가. 君自壁藏出銀曰 <경종실록 1722년 4월 13일>

나. 壁藏門壁植二箇, 雙發阿只引防八箇. <昌慶宮營建都監儀軌, 實入, 體元閣>

(23) 가. 奉置神藏於壇上, <숙종실록 1712년(숙종 38) 1월 6일>

나. 第十一室神藏上隔貼 <영조실록 1748년(영조 24) 3월 7일>

(24) 周易稱聚人曰財, 大學言財聚則民散, 故鹿臺聚而殷郊虛, 彩藏充而漢社危, 瓊林積而唐室衰, 洛口盈而隋祚滅 <朝鮮宣祖實錄 113, 32년5月辛酉>

(21가)의 冊藏과 (21나)의 冊藏 모두 ‘책장’을 나타낸다. 또 (22가)의 壁藏과 (22나)의 壁藏은 모두 ‘벽장’을 나타낸다. 그리고 (23가)의 神藏과 (23나) 神藏은 모두 ‘신장’을 나타낸다. ‘冊藏, 壁藏, 神藏’ 등을 검토해 보면, 藏으로도 가구의 일종인 ‘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冊藏, 壁藏, 神藏’ 등은 한국 고유한자 藏이 한자 藏에서 유래된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24)의 彩藏에서 藏은 가구의 일종인 ‘장’의 의미라기 보다는 ‘창고’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한국한자어사전』에서 彩藏의 의미를 ‘갖가지 비단과 寶貨 따위를 저장하는 창고’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藏은 물건을 비축하는 관직명으로도 사용되어 주목된다.

(25) 가. 書冊刊印後, 監印官以下, 考其能不賞罰(無誤錯則監印官論賞, 唱準許給別仕, 每卷三字以上誤錯, 則監印官論罰, 唱準及守藏.均字.印出匠, 並削仕). 《六典條例 6, 禮典, 校書館, 總例》

나. 守藏諸員遞易之時, 新舊諸員入來鑄所, 照數傳掌. <鑄字所應行節目, 節目>

(25)의 守藏은 ‘할자의 관리를 맡은 관직명’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守藏은 守藏으로도 표기된다.

(26) 가. 守藏諸員四十四, 粧冊諸員二十. <經國大典 1, 吏典, 雜職, 校書館>

나. 遂分諸字, 貯於藏櫃, 其守字者曰守藏, 年少公奴爲之. 其書草唱准者曰唱准, 皆解文者爲之. 守藏列字於書草上, 移之於板曰上板. <慵齋叢話 7>

다. 吏胥(書吏十人內二人, 內閣綸綍書吏兼, 奇別書吏一人. 庫直二名, 大廳直一名, 守藏諸員十名內一名, 內閣大廳直兼, 粧冊諸員十二名內二名, 內閣大廳直兼). <六典條例 6, 禮典, 校書館>

할자의 관리를 맡은 관직명으로 守藏과 守藏 모두 가능하다는 것은 守藏에서 守藏이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준다. 고려 시대에 ‘廩藏(관아에서 돈이나 곡식을 출납하거나 보관하는 일), 租藏(고려 초기,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하던 관리)’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점도 한자 藏에서 한국 고유한자 藏이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해 준다. 따라 한국 고유한자 藏은 한자 藏에 木 편방을 첨가하여 만든 형성의 고유한자가 된다.

2) 襦

襦에 대해서는 최동언(2001 : 45)만 ‘새로 만든 글자’라 하여 한국 고유한자로 다루었다. 襦의 의미를 최동언(2001 : 45)은 ‘포대기’라 하였다. 襦를 ‘포대기’의 의미로 파악한 것은 다소 잘

못된 것이다.

襦는 중국의 역대 각종 자서나 운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 현대에 간행된 『異體字字典』, 『漢語大詞典』, 『中華字海』, 『漢語大字典』 등에서도 襦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 문헌자료에서는 襦가 다음과 같이 출현하고 있다.

(27) 가. 지금 나는 襦衣를 자리 오른쪽에 놓아 두었으니, 곧 朝服에 띠를 띠는 의미이다.¹⁸⁾

<영조실록 1747년(영조 23) 8월 6일>

나. 至於殿座之時, 亦以襦衣, 周遮左右, 俾無外氣之闖襲, 千萬伏望, 付貼加減硫黃散製入事 <승정원일기 1814년(순조 14) 12월 15일>

(27)의 襦衣는 薦衣로도 나타난다.

(28) 가. 淳曰 雖或臨廁 以薦衣之屬 擁之如何? <승정원일기 영조 9년 8월 7일 을묘 1733년 >

나. 衾枕則一薦衣一木枕 <순조실록 1권, 명경 왕비가 내린 行錄>

襦衣와 薦衣는 ‘처네’로 읽는다. ‘천의’가 ‘처네’로 실현된 것은 오늘날 부분적으로 ‘의’를 ‘에’로 발음하는 현상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처네’의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 이불 밑에 덧덮는 얇고 작은 이불, 「2」 어린애를 업을 때 두르는 끈이 달린 작은 포대기, 「3」 주로 시골 여자가 나들이를 할 때 머리에 쓰던 쓰개. 두령이 비슷하게 만들며 장옷보다 짧고 소매가 없다.=머리처네.”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처네’의 의미 중 ‘이불’이란 의미가 다음과 같은 자료와 관련하여 주목 된다.

(29) 가. 薦, “3.墊席; 墊褥. 《韓非子·存韓》: “韓事秦三十餘年, 出則爲扞蔽, 入則爲薦薦.”

《楚辭·劉向〈九歎·逢紛〉》: “薛荔飾而陸離薦兮, 魚鱗衣而白蜺裳.” 王逸注: “薦, 臥席也.” <漢語大詞典>

나. 薦席은 譬小乘의 諸定姑息之法이니 <조선 뜻근 小乘의 여러 가짓 定 안즉 쉬는 법을 가질비니 <법화경언해 2 243a>

(29가)는 한자 薦의 의미가 ‘요[褥]’임을 말해 주고 있고, (29나)는 薦席의 薦이 ‘짚다(갈다)’의 의미임을 말해 주고 있다. 薦衣가 ‘이불’이라는 점에서 薦衣의 薦을 ‘요’를 뜻하는 한자 薦과 직접 연관 지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불’의 뜻인 薦衣에 있는 薦의 의미를 한자 薦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29나)의 薦席이 한어이므로 薦衣 또한 한어의 성격을 가진 것이지 훈차 표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한자어 薦衣에서 衣 편방이 첨가되어 襦衣의 襦가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襦는 한자 薦을 기반으로 구성된 형성의 고유한자로 파악된다.

3.3. 회의 겸 형성의 고유한자

1) 礫

18) 『영조실록』, 1747년(영조 23) 8월 6일, “今予則置襦衣座右 卽朝服拖紳之意”

硤에 대하여 鮎貝房之進(1971)은 俗字, 『新字典』은 朝鮮俗字, 김종훈(1983)은 國字, 『한국한자어사전』은 國字라 하여 관련 연구에서 모두 硤을 한국 고유한자로 규정하였다. 한국 자료에서 硤이 출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30) 가. 重城縣 本高句麗七重縣 景德王改名 今積城縣 <三國史記地理誌 來蘇郡>

나. 積城縣本高句麗七重城 新羅景德王改名重城 爲來蘇郡領縣 <高麗史地理誌>

다. 長湍南畔硤城西 山擁茅茨水泊堤 中有主人三徑在 卜隣吾欲共携提。 <牧隱詩藁卷之三十五 長湍吟 訪硤城俞先生不遇 夫人邀入客位 具酒飧甚厚 又請登後園小山四望曰我公意也 蓋欲令老夫知其形勝也 歸而志之 三首>

라. 又有詩曰 長湍南畔硤城西 硤字 字書亦闕攷 硤城 似是積城 沿江皆石壁 案姓譜 有硤城白氏 <靑莊館全書卷之六十 盡葉記七 機硤>

마. 硤【音赤 牧隱詩 長湍南畔硤城西 似是積城 又姓譜有硤城白氏】<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

(31) 가. 磧城縣 本百濟礪坪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三國史記 권36 雜誌5 地理三 新羅 淳化郡>

나. 赤城縣【赤一作磧 又作硤】本百濟礪坪縣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淳化郡領縣 高麗初, 來屬, 後還屬淳昌郡. <高麗史 卷五十七 地理 二 積성현>

다. 古屬縣二 福興 赤城【本百濟 礪坪縣 新羅改赤城縣 高麗初 爲南原府任內 後來屬】<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南原都護府 淳昌郡>

라. 赤城廢縣, 在郡東十五里. 赤, 一作磧, 又作硤 <新增東國輿地勝覽 39, 全羅道, 淳昌 고적>

(30)은 경기도 장단군 적성면 관련 지명 표기 자료이고, (31)은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관련 지명 표기 자료이다. (31)에서 보는 것처럼 장단군 적성면의 경우 관련 지명 표기가 시대적으로 ‘七重縣, 重城縣, 積城縣, 硤城’ 등이 존재했었고, (31)에서 보는 것처럼 순창군 적성면의 경우 고나린 지명 표기가 ‘礪坪縣, 磧城縣, 硤城, 赤城’ 등이 있었다.

(30)의 관련 지명 표기 ‘七重縣, 重城縣, 積城縣, 硤城’ 등의 경우에, 硤城을 제외한 ‘七重縣, 重城縣, 積城縣’ 등은 유사한 의미를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重과 積은 유사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硤城의 경우에는 ‘七重縣, 重城縣, 積城縣’ 등과는 다른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31)의 지명 표기 ‘礪坪縣, 磧城縣, 硤城, 赤城’ 등의 경우에 ‘礪坪縣, 磧城縣’ 등은 유사한 의미를 표기한 것이나, ‘硤城, 赤城’ 등의 표기는 ‘礪坪縣, 磧城縣’과는 다른 의미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硤城과 赤城은 유사한 의미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礪坪縣은 백제의 지명 표기이고 磧城縣은 신라 경덕왕 개명한 신라의 지명 표기이다. 경덕왕이 개명한 신라 지명 표기 密城郡은 본래 推火郡이었므로 우리말 표기 ‘火[벌]’이 경덕왕의 지명 개정 시에 한자 또는 훈차 표기 城을 교체된 것처럼 우리말 표기 ‘坪[들]’이 城으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礪과 磧이 동일한 의미를 가졌음은 다음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2) 가. 沙는 물애오 礫은 허근 돌히오 <月印釋譜 권10 117b>, 入此水中하야 除去瓦礫하
라호니 / 이 브레 드러 디셋 지벽을 아스라 호니 <楞嚴經諺解 권5 72b>, 其土는 坑
坎沙礫이 爲地하니 / 그 짜흔 군과 물애와 돌히 짜히 드외니 <法華經諺解 권2
36b>, 礫 몽우리돌 록 <訓蒙字會 上:4a>

나. 磧은 몫 7새 돌 잇는 짜히라 <月印釋譜 권10 86a>, 磧 작벼리 적 <訓蒙字會 上:
4a>

(32가)에서 제시한 『훈몽자회』 상:4a의 ‘礫 몽우리돌 록’으로 礫과 (32나) 磧의 의미적 유사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몽우리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몽우리돌’로 실려 있는데, ‘몽우리돌’의
의미를 ‘모난 데가 없이 둥글둥글하게 생긴 큼지막한 돌’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흐르는
강물의 작용으로 돌이 모가 나지 않게 되므로 ‘물가에 있는 돌’의 의미인 磧은 ‘몽우리돌’을
뜻하는 礫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31)의 礪城과 赤城에서 礪城을 기반으로 赤城이 파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赤城을 기반으
로 礪城이 파생되었을 가능성은 보다 적다. 이제 磧과 礪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가 된
다. 磧과 礪이 의미가 다른 계통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磧에서 礪이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생각
하는 방법이다.

磧과 礪을 의미가 다른 계통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鮎貝房之進(1931 : 156-157)에서 제안되었
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경기도 적성현의 고적 조에 赤岩鄉이 나오고, 적성현의 토산 조에 赤
土가 나오는 것을 근거로 鮎貝房之進(1971 :156-157)은 礪을 會意造字로 파악하였다. 그리하
여 鮎貝房之進(1971 :156-157)은 礪의 의미를 ‘붉은 바위’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赤岩鄉이
적성현의 동쪽 10리에 위치해 있고, 또 적성현의 토산물로 赤土가 산출되므로 礪城縣의 礪을
‘붉은 바위가 쌓인 것’으로 해석하여 礪이 礪으로 교체된 것이라는 鮎貝房之進(1971
:156-157)의 견해는 타당한 일면이 있다.

鮎貝房之進(1971 :156-157)는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의 지명 표기 礪城縣에서 礪이 礪으로
교체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32) 가. 赤城山 赤城縣에 있다. 봉우리 셋이 솟아 있는데, 절벽이 천 길이나 되며 中峯 위
에는 작은 암자가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淳昌郡 山川>

나. 赤城津 즉 任實縣 烏源川의 하류가 된다. 일명 花淵이라고도 하는데, 赤城山 아래
에 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데 세속에서 전하기를, 신
령스런 것이 있다고 하며, 날이 가물면 기우제를 지낸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淳昌郡
山川>

다. 釵笄山,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형상이어서 冊如山, 적성강을 품고 있어 赤城
山, 화산 웅바위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서 華山 등으로 불린다. 하지만 고시된 지명은
화산이다. <디지털순창문화대전¹⁹⁾>

礪城山에서 파생된 赤城山은 (32다)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이름으로 오늘날 불리고 있다. 그
런데 어떤 기록에 따르면 釵笄山에는 일제시기에 규산염광물 광산이 있었다고 한다. 규산염광
물 가운데에 홍주석²⁰⁾이 있는데 이 홍주석이 ‘붉은 빛갈’이므로 礪城縣에서 礪은 ‘붉은 돌’의

19) <http://sunchang.grandculture.net/sunchang/toc/GC05900089>

20) 『표준국어대사전』, 紅柱石, “『광업』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 사방 정계에 속하는 기동

의미를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3.4 偏旁을 교체한 형성 고유한자

1) 湫

湫에 대하여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에서는 동국토속자, 신자전에서는 조선 속자, 鮎貝房之進(1931 : 125)에서는 속자, 최동언(2001 : 95)에서는 ‘뜻과 음이 함께 보태여진 글자’, 한자 湫을 감안하여 김종훈(1983)에서는 국음자, 한국한자어사전에서는 국의자라 하였다. 두시언해 권15 47a의 ‘湫流何處入/횃도로 흐르는 므른 어드러서 드러오느뇨’에서 보는 것처럼 한자 湫는 ‘강물이 선회하는 것’을 의미하나 한국 고유한자 湫는 ‘강물을 가로막아 만든 독’을 의미하는 ‘보’를 의미하므로 한국 고유한자 湫에는 자형 상 한국 고유성이 있다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보막이’에서의 ‘보’의 의미를 가지는 한국 고유한자 湫의 대표적 출현 용례는 다음과 같다.

- (33) 가. 貞元十四年 戊寅 四月十三日 蓐堤 治 記之 謂 湫²¹堤 傷故 <永川蓐堤碑(798)>
나. 눈이 녹은 물[雪水]은 五穀의 精氣이니, 매년 9월에 얼음이 얼기 전에 湫나 堤堰을 더 쌓아서 얼음이나 눈의 물을 저장하였다가²²) <태종실록 1418년(태종 18년) 1월 13일>
다. 大難湫【在縣西及鴻山東中央 堤長二百十七尺 灌溉國屯田七十四結】<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公州牧 扶餘縣>
(33) 가. *堤 亦作“隄”. 1.沿江河湖海修筑的防水建築物. 多用土、石筑成. 《左傳·襄公二十六年》:“宋芮司徒生女子, 赤而毛, 棄諸堤下.” <漢語大詞典>
나. 湫【音保 俗訓引水灌田之名 與字書瀦字義同】<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

(33)에 출현한 湫의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 한자 堤에 대한 (33가)의 의미 풀이 중에서 ‘沿江河湖海’가 주목된다. 이러한 풀이에 근거하여 한자 堤의 의미를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쌓은 독’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32가)의 湫堤와 (33나)의 湫堤堰이 주목된다. 湫堤를 ‘湫의 堤’로 해석하기 보다는 ‘湫와 堤’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湫堤堰을 ‘湫의 堤堰’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湫와 堤堰’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湫堤를 ‘湫와 堤’로 해석하고, 湫堤堰을 ‘湫와 堤堰’으로 해석할 경우에 堤가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쌓은 독’이므로 湫는 ‘강물을 가로 막은 독’으로 이해된다.

(33나)에서는 ‘보’를 뜻하는 한국 고유한자 湫가 한자 瀦와 동일한 뜻이라고 하였다. 한자에서 瀦는 ‘회돌아 흐르는 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자 瀦는 한자 湫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하여 ‘물이 회돌아 흐르는 것’이므로 ‘보’를 뜻하는 한국 고유한자 湫가 한자 湫에서 혼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들보’의 ‘보’를 의미하

모양 결정으로, 장미색, 자주색, 녹회색 따위를 띠고 광택이 있다. 높은 온도에서 잘 견디므로 내화물로 쓴다. 우리나라 특산물로, 경기·전북·평남·평북 등지에서 난다.”

21) 湫를 湫(한국고대사연구회), 湫(石上英一), 湫(田中俊明), 湫(金昌鎬) 등으로 판독하기도 한다.

22) 『태종실록』, 1418년(태종 18년) 1월 13일, “雪水 五穀之精 每年九月氷凍前 湫堤堰加築 貯氷雪水”

는 한자 樑에는 ‘가로 지르다’의 의미가 있고 한국 고유한자 湫에는 ‘강물을 가로 지르다’의 의미가 더 강하므로 한국 고유한자 湫는 ‘들보’의 ‘보’를 의미하는 한자 湫에서 木 편방을 彳 편방으로 교체하여 형성된 자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자 湫에서 편방을 교체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한자 湫를 조어하는 능력은 중국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를 의미하는 湫는 한반도 인접 중국 지역에서 발생되어 한국으로 차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綰

綰은 ‘옷이나 방석의 가장자리’를 뜻한다. 綰이 가진 이러한 의미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 가. 綰【音宣 俗訓席筵邊飾曰綰】<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

나. 衣緣稱綰(音선). <晝永篇 下>

다. 綰 선 席筵邊飾 선 두를 見俗書 <新字典 朝鮮俗字部>

(34)의 綰에 대하여 「東國土俗字辨證說」은 東國土俗字, 鮎貝房之進(1931 :212-215)은 俗字, 김중훈(1983)은 國字, 『新字典』은 朝鮮俗字, 『한국한자어사전』은 國字 최동언(1987)은 ‘새로 만든 글자’라 하여 관련 연구에서 綰을 모두 한국의 고유한자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역대 각종 자서나 운서에 綰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현대에 간행된 『異體字字典』, 『漢語大詞典』, 『中華字海』, 『漢語大字典』 등에서도 綰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일부 문헌 자료에서 ‘綰染, 綰淡’ 등이 출현한 사례가 발견되나 ‘渲染, 綰淡’ 등의 渲을 綰으로 오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鮎貝房之進(1931 :213)은 한국에서 ‘가장자리’를 뜻하는 綰이 한자에서 緣의 의미를 가지는 襪의 俗字로 파악하고 있다. 鮎貝房之進(1931 :213)이 綰을 襪과 연관시킨 것은 周書에서 ‘고구려 사람들은 저고리에 끝동[襪]을 달았다’²³⁾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綰을 襪의 이체자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綰이 사용된 이른 시기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35) 가. 其內施紫綰踏席地衣一 <세종실록 1420년(세종 2) 9월 16일>

나. 紫綰踏席地衣一 <세종실록 1422년(세종 4) 9월 6일>

(35)에 사용된 綰은 모두 ‘가장자리’의 의미를 가진다.

綰을 綰의 의미로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36) 가. 壁綰四十四箇 土壁綰五十二箇 <昌慶宮營建都監儀軌 實入 通明殿二十八間>

나. 壁綰八 樓柱四條 土壁綰二十四 材木三條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造成所>

綰이 ‘모형’의 뜻이고 옷이나 방석의 ‘가장자리’도 옷이나 방석의 ‘모형’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36나) 綰은 ‘모형’의 뜻으로 綰을 대신하여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綰은 綰을 기

23) 『周書』, 異域傳上, 高麗, “婦人服裙襪 裾袖皆爲襪”

반으로 木 편방을 糸 편방으로 교체하여 綌의 자형을 구성하여 ‘옷이나 방석의 가장 자리’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자 綌에서 편방을 교체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한자 綌를 조어하는 능력은 중국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옷이나 방석의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綌는 한반도 인접 중국 지역에서 발생되어 한국으로 차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언

생략함

<참고 문헌>

1. 자료

『康熙字典』(<http://tool.httpcn.com/KangXi>)

『三國遺事』(대제각, 1987)

『新字典』(朝鮮光文會, 1915)

『新增東國輿地勝覽』(전국지리지, 아세아문화사, 1983)

『五洲衍文長箋散稿』(한국고전번역원정보시스템,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대만 교육부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晝永編』(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古3638-27-1-2)

『中華字海 上 下』(中國友誼出版公司, 2000)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1991-1993),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

『訓蒙字會』(東洋學叢書 第一輯, 197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檀國大東洋學研究所 編(1999-2008),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檀國大東洋學研究所 編(1992-1996), 『韓國漢字語辭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 논저

金鍾埴(1983), 『韓國固有漢字研究』, 集文堂.

남풍현(1989, 2014), 「한국의 고유한자」, 『韓國語와 漢字·漢文의 만남』, 도서출판 월인, 575-592.

이건식(2009ㄱ), 「한국 고유한자의 발달-지명의 후부 요소 표기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22, 구결학회, 219-259.

이건식(2009ㄴ), 「朝鮮 前期 文獻 資料에 나타난 魚類名 表記에 대한 研究」, 『국어학』, 55, 국어학회, 125-172.

이건식(2011), 「한국 고유한자 ㅁ의 시대별 용례와 시원적 의미」, 『국문학논집』 21,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27-355.

이건식(2012), 「한국 고유한자 자형 구성 방법 연구 二題-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形聲으로 만들어진 한국 고유한자의 몇 가지 사례」, 『東洋學』 5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87-211.

이건식(2013), 「한국 고유한자 구성 요소 ㄴ의 의미와 특수성 형성 배경」, 『한민족문화연구』 42, 한민족문화학회, 101-139.

- 이건식(2015), 「통합 漢韓大辭典의 國字 처리에 대하여」, 『東洋學』 5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43-167.
- 이건식(2019ㄱ),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의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의 필요성」, 『東洋學』 7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97-127.
- 이건식(2019ㄴ), 「訓借 표기 기반 日本 國字와 音借 표기 기반 韓國 固有漢字에 대하여」, 『口訣研究』 43, 日本大辞典刊行委員會(昭和 47年), 『日本國語大辞典[縮刷版]』, 小學館.
- 鮎貝房之進(1931), 『俗字攷』, 雜攷, 東京: 圖書刊行會(『原本 향약채취월경·俗字攷·俗文攷·借字攷』, 대제각, 1987).
- 정구복 외(2012), 『개정증보 譯註三國史記 주석편 4』,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최동언(2001), 『조선식 한문 연구』, 북한 사회과학원.